

「Hana 1Q bank CMS^{Global} 이용계약서」

1. 개정시행일: 2016. 10. 10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제1조~제10조 (내용 생략)</p> <p>제11조 (면책)</p> <p>① “은행”은 다음의 각 호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은행”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은 자신의 재해복구계획과 업무연속성 계획에 따라 “고객”이 “본 계약”의 “서비스”를 제한적인 범위 또는 대체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수, 악천후 등 천재지변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화재, 전쟁, 테러, 폭발, 사회소요사태, 산업분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외 법령, 규제조치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통신기기, 통신회선의 장애 등으로 장기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p>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이 계약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본 계약”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은행”이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 3.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4. “고객”의 착오 또는 오류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의 경우 5. 다른 “연계은행”의 인터넷 서비스 장애, 정지, 해지로 인한 거래 불능의 경우 6. “서비스” 이용 PC 등에 등록된 인터넷 서비스 정보, 계좌관련 정보 등이 상이하거나 수정되어 거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7. “고객”의 이용자 PC등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p>제12조~제18조 (내용 생략)</p>	<p>제1조~제10조 (좌동)</p> <p>제11조 (면책)</p> <p>① “은행”은 다음의 각 호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은행”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은 자신의 재해복구계획과 업무연속성 계획에 따라 “고객”이 “본 계약”의 “서비스”를 제한적인 범위 또는 대체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수, 악천후 등 천재지변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화재, 전쟁, 테러, 폭발, 사회소요사태, 산업분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외 법령, 규제조치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통신기기, 통신회선의 장애 등으로 장기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p>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이 계약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본 계약”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은행”이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 3.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단,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4. “고객”의 착오 또는 오류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의 경우 5. 다른 “연계은행”의 인터넷 서비스 장애, 정지, 해지로 인한 거래 불능의 경우 6. “서비스” 이용 PC 등에 등록된 인터넷 서비스 정보, 계좌관련 정보 등이 상이하거나 수정되어 거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7. “고객”의 이용자 PC등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p>제12조~제18조 (좌동)</p>	<p>단서 조항 추가</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적용